

의안번호	제 347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6월 일 (제 311 회)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영주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6월 4일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4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6월 4일
발의자 : 김영주, 박종성, 최병윤,
김양희, 유완백, 정지숙,
김동환

1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 및 복무사항 정비하고, 교향악단 공연 관람료의 감면 범위를 수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예술감독, 지휘자, 사무국장의 직무 명확화(제3조)
- 직원의 위촉, 위촉기간, 해촉 등에 관한 조항 신설(제5조, 제9조)
-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의 수정(제11조)
- 관람료 감면 대상 추가(제16조)
 - 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 포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라. 기타
 - (1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.
 - 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립교향악단(이하 “도립교향악단”이라 한다)”을 “충청북도립교향악단(이하 “교향악단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교향악단에는 사무처리 등을 담당할 사무국을 둔다.

제3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단장은 교향악단을 대표하며,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총괄하고 단원과 사무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)을 지휘·감독한다.
③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지휘·감독한다.
④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·제작 등 공연업무를 총괄하며, 지휘자와 예술감독은 겸한다.
⑤ 사무국장은 교향악단의 홍보, 마케팅 등 제반 행정사항을 총괄한다.

제4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상임단원은 공연에 출연하는 상시근무자를 말한다.
③ 비상임단원은 주 3일 이상 근무하며 연주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인정된 자는”을 “인정된 자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도지사는 예술분야의 식견이 풍부하고 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한 능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위촉한다.
- ⑤ 도지사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무국장으로 위촉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의 위촉과 단원의 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.

제7조의 제목을 “전형방법”으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서류심사, 실기시험, 면접시험으로 하며, 면접시험은 실기시험에 합격한 단원에 한하여 실시한다.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으로 할 수 있다.

제8조 중 “단원으로”는 “단원과 직원으로”로 한다.

제9조의 본문 중 “단원의”를 “단원과 직원의”로 하고, 본문을 제1항으로 두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무직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”를 “직원은 규칙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단원의 해촉”을 “단원 등의 해촉”으로 하고, 제10조 중 “단원의”를 “단원과 직원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상임단원으로서”를 “상임단원과 직원으로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단원으로서”를 “단원과 직원으로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도립교향악단의”를 “교향악단의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도립교향악단”을 “교향악단”으로 하고, “자문역할을”을 “자문역할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같은 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환경국장과 예술감독으로 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, 현장예술인 또는 언론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⑥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교향악단 운영과 발전방안

2. 교향악단 운영 기본계획

3. 단원과 직원의 해촉

4.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제1항 중 “단원 및 사무직원은”을 “예술감독, 상임단원, 직원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단원 및 사무직원의”를 “단원 및 직원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립교향악단”을 “교향악단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 “단원 및 사무직원에게”를 “단원과 직원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”를 “범위에서 규칙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“도립교향악단”을 “교향악단”이라 한다.

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【별표】

관람료 감면 구분(제16조 관련)

구 분	대 상	감면 요율 (%)	
할 인	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가족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받는 자	50
	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받는 자	50
	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5.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받는 자	50
병역명문가 가족	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	50	
	노인	노인복지법 적용 대상자 (65세 이상)	50
단체	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단체	20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<생 략></p> <p>제2조(구성) ① <u>충청북도립교향악단</u>(이하 “도립교향악단”이라 한다)의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단장은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된다.</p> <p>② 도립교향악단에는 교향악단과 사무국을 둔다.</p> <p>③ 교향악단의 구성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은 42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조 <현행과 같음></p> <p>제2조(구성) ① <u>충청북도립교향악단(이하 “교향악단”이라 한다)</u>의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단장은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된다.</p> <p>② 교향악단에는 사무처리 등을 담당할 사무국을 둔다.</p> <p>③ 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하며, -----.</p>
<p>제3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도립교향악단을 대표하며,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명을 받아 도립교향악단을 총괄하고 단원과 사무직원을 지휘감독 한다.</p> <p>② <생 략></p> <p>③ 예술감독겸 지휘자(이하 “예술감독”이라 한다)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주를 지휘 한다.</p> <p>④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연주기획, 홍보, 마케팅, 단원관리, 사무 등 제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.</p>	<p>제3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-----</p> <p>-----,</p> <p>연주단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과 사무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)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 <p>③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④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·제작 등 공연업무를 총괄하며, 지휘자와 예술감독은 겸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 ① <생 략></p> <p>② <u>상임단원은 도립교향악단의 일원으로서 공연에 출연하는 상시근무자를 말한다.</u></p> <p>③ <u>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.</u></p>	<p>⑤ <u>사무국장은 교향악단의 홍보, 마케팅 등 제반 행정사항을 총괄한다.</u></p> <p>제4조 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<u>상임단원은 공연에 출연하는 상시근무자를 말한다.</u></p> <p>③ ----- 주 3일 이상 근무하며 공연에 출연하는 자를 말한다.</p>
<p>제5조(자격과 위촉) ①~② <생 략></p> <p>③ <u>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춘 자 중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.</u> 다만, 국·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<u>인정된 자는</u>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자격과 위촉) ①~② <현행과 같음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정된 자와 도지사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자는 -----.</u></p> <p>④ <u>도지사는 예술분야의 식견이 풍부하고 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한 능력이 있는 자를 공개전형을 거쳐 직원으로 위촉한다.</u> <신 설></p> <p>⑤ <u>도지사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개전형을 거쳐 사무국장으로 위촉한다.</u> <신 설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 (전형위원회) ① <u>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의 위촉을 위한 전형과 단원의 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②~③ <생략></p>	<p>제6조 (전형위원회) ① <u>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 위촉과</u> ----- -----.</p> <p>②~③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7조(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 전형 방법) ① <u>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및 경력평정으로 하며, 면접시험은 실기시험에 합격한 단원에 한하여 실시한다. 다만 제5조 제3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생략></p>	<p>제7조(전형방법) ① <u>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서류심사, 실기시험, 면접시험으로 하며, 면접시험은 실기시험에 합격한 단원에 한하여 실시한다.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8조(결격사유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<u>단원으로</u> 위촉할 수 없다.</p>	<p>제8조(결격사유) ----- -----<u>단원과 직원으로</u> -----.</p>
<p>제9조(위촉기간)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</p> <p>② <u>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과 사무직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(위촉기간) ① <u>단원과 직원의</u> -----. ② ----- <u>단원과 직원은</u> <u>규칙에 따라</u> -----.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<u>단원의 해촉</u>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<u>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~3. <생 략></p> <p>4. <u>상임단원으로서</u>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</p> <p>5. <u>단원으로서</u> 품위를 손상한 자</p> <p>6. <u>도립교향악단의</u> 활동을 거부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</p> <p>7.~8. <생 략></p> <p>제11조(운영자문위원회) ① <u>도립교향악단</u> 운영의 <u>자문역할을</u>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교향악단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운영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<생 략></p> <p>③ <u>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,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</u> 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④ <u>위촉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, 현장 예술인 또는 언론인</u>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	<p>제10조(<u>단원 등의 해촉</u>)----- ----- <u>단원과 직원의</u> -----.</p> <p>1.~3. <현행과 같음></p> <p>4. <u>상임단원 및 직원으로서</u>----- -----.</p> <p>5. <u>단원 및 직원으로서</u> -----</p> <p>6. <u>교향악단의</u>----- -----</p> <p>7.~8. <현행과 같음></p> <p>제11조(운영자문위원회) ① <u>교향악단</u>----- <u>자문역할을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 <p>③ <u>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환경국장과 예술감독으로</u> 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④ <u>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, 현장 예술인 또는 언론인</u>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</p> <p>⑥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</p> <p>1. 교향악단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</p> <p>2. 교향악단 운영 기본계획</p> <p>3. 단원 및 사무직원의 해촉 건의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⑦~⑧ <생략></p> <p>제12조(겸직금지 및 복무 등) ① 단원 및 사무직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다만,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</p> <p>② <생략></p> <p>③ 단원 및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p> <p>제13조 (예산지원 등) ① 도립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을 충청북도 일반회계예산으로 충당한다.</p>	<p>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</p> <p>⑥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</p> <p>1. 교향악단 운영과 발전방안</p> <p>2. 교향악단 운영 기본계획</p> <p>3. 단원과 직원의 해촉</p> <p>4.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⑦~⑧ <현행과 같음></p> <p>제12조(겸직금지 및 복무 등) ① 예술감독, 상임단원, 직원은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 <p>③ 단원과 직원의 ----- -----.</p> <p>제13조 (예산지원 등) ① 교향악단의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도지사는 <u>도립교향악단</u>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연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공연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보수 및 실비보상) ① <u>단원</u> 및 <u>사무직원</u>에게 지급하는 보수,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② 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위원 및 운영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<u>예산의 범위</u>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교향악단으로 선정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4조(보수 및 실비보상) ① <u>단원과 직원에게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따라 ----- -----.</p>
<p>제15조 (관람료 등) ① <u>도립교향악단</u>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도립교향악단</u>의 외부공연으로 출연료를 받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 수입으로 한다.</p>	<p>제15조 (관람료 등) ① <u>교향악단이</u>----- -----.</p> <p>② <u>교향악단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6조(관람료의 감면) ① <생 략></p> <p>1. ~5. <생 략></p> <p>② <생 략></p>	<p>제16조(관람료의 감면) 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1. ~5. <현행과 같음></p> <p>6. 「<u>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</u>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 <신설>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
제17조~제18조 <생 략>	제17조~제18조 <현행과 같음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